

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신규 지정신청 관련 다빈도 Q&A

Q1. 직무교육기관 심사평가 과정과 신규지정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심사평가 과정 : 고용노동부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의 인증평가를 받은 후, 공단에서 제공한 직무교육교재(파일 제공)로 훈련과정에 대한 통합심사(상·하반기)를 인정받아야 합니다.
- ▶ 신규지정 신청방법 : 공단 세부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규지정 신청하여야 합니다.

Q2. 고용노동부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 훈련 과정 인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을 고용노동부에 또 인정받아야 하나요?

- ▶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의 「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으로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교육과는 전혀 다른 훈련과정입니다.
- ▶ 따라서, **요양보호사 직무교육** 훈련과정으로 고용노동부(직업능력심사평가원)로부터 별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
Q3. 직무교육기관 지정요건에서 최근 1년간 실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▶ 최근 1년간 실적은 지정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이며, 다음 예시를 참고바랍니다.
예시)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이 2019.3.31.(24회) 까지 있는 교육기관은, 지정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0.4.1. 이후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Q4. 공단에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인력 및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모두 있어야만 가능한가요?

- ▶ 둘 중 하나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5. 공단에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인력 및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?

- ▶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실적이 있는 경우
 - ☞ 공단 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
다만, 지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공단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
 - ☞ 최근 1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한 '훈련수료자보고서' 1부를 출력하여 공단에 제출

Q6.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대표자가 직접 공단(지사)에 제출해야 하나요?

- ▶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하여야 합니다.
- ▶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,
 - ☞ 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지참

Q7. 신청 시 첨부서류 어떻게 되나요?

- ▶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,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1. 신분증

- 가.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본인 신분증 1부
 - 나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각 1부
- 2. 교육기관 지정서 또는 신고증 1부
 - 3.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 - 4. 강사요원 현황(붙임서식) 및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
 - 5.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Q8. 인증평가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서류인가요?

- ▶ 신규지정 신청 시 필요한 인증평가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HRD-Net(직업훈련포털) 인증결과 화면의 출력본입니다.

Q9. 지정신청서 '③ 법인등록번호', '④ 법인명'은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?

- ▶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인 경우 : 해당 서식 작성
- ▶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이 아닌 경우 : 작성하지 않음

Q10.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과목별로 강사를 정해야 하나요?

훈련과정명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명 이상의 강사가 강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▶ 직업훈련포털 HRD-Net에 훈련과정명을 반드시 "요양보호사 직무교육"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훈련과정명을 다르게 등록할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Q11.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의 과목 등을 기관에서 수정 등 변경이 가능한가요?

- ▶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제공한 교재의 과목과 내용,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공단이 제공한 교육내용을 줄이는 등 교육내용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

Q12. 공단지정 후 신규 계약 및 해지된 강사가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?

- ▶ 공단에 신고 된 강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, 교육실시 전 관련 첨부서류와 별지 제5호 서식 "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청서"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13. 공단에서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나요?

▶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직무교육기관이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
2. 직무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
3.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·폐지되었거나 관련기관의 행정처분(지정취소)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4.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(휴업기간을 포함한다)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5. 직무교육기관이 공단 직원의 직무교육 참관을 방해하거나 직무교육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6. 직무교육기관이 폐지·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폐지·휴업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,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Q13.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관련 유관기관 대표번호는 어떻게 되나요?

수행기관	수행업무	대표번호
전국 고용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HRD-net 사용인증• 훈련시설 인·지정• 훈련과정 지도·점검• 행정처분 등	☎ 1350
한국산업인력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사업주훈련과정 인정 및 운영관련사항• 수료자 확정	☎ 1644-8100
한국고용정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HRD-net 시스템 운영 및 관리	☎ 1577-7114
한국기술대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훈련기관 인증평가	☎ 1644-5113
직업능력심사평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통합심사	
근로복지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기업규모결정(대규모기업, 우선지원대상기업)• 보험료 부과	☎ 1588-0075